

##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정서(구매기업용)

| 현 행  | 개 정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조 ~ 제2조 &lt;기재 생략&gt;</p> <p>제3조 (전자채권대금 결제계좌 지정)</p> <p>①~③ &lt;기재 생략&gt;</p> <p>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<br/>나 <u>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 자동대출계좌나<br/>당좌대출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<br/>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<br/>일어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이의를<br/>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4조 ~ 제20조 &lt;기재 생략&gt;<br/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제1조 ~ 제2조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제3조 (전자채권대금 결제계좌 지정)</p> <p>①~③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<br/>나, <u>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<br/>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<br/>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<br/>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체결<br/>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<br/>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4조 ~ 제20조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<br/>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 | <p>- 약관변경<br/>권고반영</p> |